

의안번호	2209428
의 퇴 인	김장겸의원
회 답 일	2025. 4. 30.
추계번호	25A2001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조제1호 (정의)	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함. 다만, <u>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고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하는 문구를 삭제</u>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조제1호 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가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1인 창조기업의 정의에 현재 시행령¹⁾에서 제외 업종으로 정하는 부동산, 금융업 등을 포함할 경우,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(안 제2조제1호)
 -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, 현재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사업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사무공간, 창업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음
 - 중소벤처기업부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현황 개요는 [참고자료]에 제시

1) 현행법에서는 시행령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함

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2조(1인 창조기업의 범위) ① 「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에서 "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"이란 그 주된 사업이 별표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.

- 개정안에 따라 지원 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의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대부분 재량규정으로 지원범위 및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하기에 한계가 있음
 - 기술개발(제11조), 아이디어의 사업화(제12조), 해외진출 지원(제13조), 홍보사업(제14조)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지원범위 및 대상을 파악하기 어렵고,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중인 사업으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산정하기가 어려움

-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, 개정안에 따른 비용추계는 「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작성자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추계세제총괄과	서영빈	권아영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서영빈	02-6788-4653	ybin@assembly.go.kr

[참고자료]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사업 현황

1. 사업명

-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(5134-310)

2. 사업목적

- 전국에 분포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(40개) 운영 및 사무공간·경영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 기반 제공

3. 예산현황

- ('24) 45.98억원 → ('25) 31.43억원(14.55억원 감)

4. 주요내용

- 1인 창조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를 위한 사무공간, 창업교육 등을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운영비를 지원
 - 운영비는 인건비, 임차료, 시설장비유지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으며, 센터 성과평가(연차평가)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
 - 센터별 지원예산 : ('24) 최저 0.65억원~ 최대 1.15억원
→ ('25) 최저 0.5억원~ 최대 1.2억원

구 분	주요내용
사무공간	• (예비)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사무공간 제공
전문가 자문	• 세무, 회계, 법률, 창업, 시장조사, 유망산업, 정보제공 등
교육·멘토링	• 경영, 마케팅 등 센터별 기본·특화 교육 제공
네트워킹	• 동·이종 창업기업 및 투자기관 등 네트워크 활동 지원
기반조성	•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(국가승인통계), 만족도 조사, 통합 경진대회 등을 통해 창업환경 조성 및 인지도 제고

5. 추진계획

- 지역 유망기술 보유기업 발굴·육성을 위한 전문센터 도입
 - － 급변하는 글로벌 창업생태계 환경에서 AI 등 특화분야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센터 구축

6. 이외 관련 사업

- 창업생태계활성화지원 사업 예산으로 1인 창조기업의 사업화자금 지원은 어려우나, 타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1인 창조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中
 - － (가점) 지원사업 평가시 1인 창조기업에 가점을 부여하여 사업 선정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
 - * 창업패키지(예비·초기), 소공인특화지원, 소상공인 성장지원(또는 자부담 면제) 및 소상공인 스마트화지원
 - － (교육제공)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교육 프로그램(업종·수준별 지원)을 무료로 제공하여 성장지원 체계 강화